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장님!

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송파 제4선거구,

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이성배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,

시장이 공원에 반려동물 주의사항 안내표지를 설치하고

반려동물의 목줄 등을 걸어두거나

반려동물이 따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

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○ 근래 반려동물 문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, 공원, 운동시설 등에 반려동물의 출입과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

- 이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, 반려동물로 인해 반려동물 주인 및 일반시민의 이동이 제약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
- 이에 공원에 반려동물 관련 금지사항 및 준수사항을 기재한 반려동물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.
- 또한 반려동물을 목줄 등을 걸어둘 수 있거나 반려동물이 따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여 반려동물 주인과 시민의 이동 및 이용 편의장도 보장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